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방 송 통 신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해 우선 적용되는 통일부 소관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외 각 부처의 법령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남북교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 분야 남북 간 상호교류,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의 대상 규정
(안 제8조의2제1항)

- 1.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2.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

나.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시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 관계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안 제8조의2제2항)

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9조)

라.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 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안 제30조의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통일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2. ~ 2020. 5. 2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방송통신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2.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1호	500
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법 제48조제2항제2호	500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500
라.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500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5호	500
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	1,500
사. 법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6호	500
아.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	500
자.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2	500
차.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	1,500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8호	500
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9호	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방송통신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 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2.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11조(수입금)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 3. ~ 4.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및 가산금) ①~② (생 략)	제13조(분담금의 면제·경감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 ----- ----- -. ----- ----- -----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③ (생 략)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table><tr><td>위 반 행 위</td></tr><tr><td>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 난관리계획을 <u>제출하지 않은 경우</u></td></tr></table>	위 반 행 위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 난관리계획을 <u>제출하지 않은 경우</u>	<u>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 다.</u>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table><tr><td>위 반 행 위</td></tr><tr><td>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 난관리계획을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u></td></tr></table>	위 반 행 위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 난관리계획을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u>
위 반 행 위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 난관리계획을 <u>제출하지 않은 경우</u>					
위 반 행 위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 난관리계획을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연 락 처	(044) 202-4371